
정보기술협정(ITA) 물품 품목분류 오류 사례 연구*

박민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ustoms Classification Fallacy of certain ITA Goods

Min-Gyu Park^a

^a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Inha University, South Korea, South Korea

Received 7 March 2019, Revised 21 March 2019, Accepted 21 April 2019

Abstract

The Harmonized System comprises about 5,000 commodity groups; each identified by a six digit code, arranged in a legal and logical structure and is supported by well-defined rules to achieve uniform classification. This study reviews the appropriateness of Korea Customs Service and Tax Tribunal's customs classification decisio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for certain ITA goods. Korea Customs Service had classified arbitrary and had not applied in *dubio pro reo* principle. This paper finds that 57% of Korea Customs Service's classification decisions have erred. Korea government need to take measures to secur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HS and its periodic updating in light of developments in technology and changes in trade patterns. This paper suggest to amend customs law and regulation concerning classification committee.

Keywords: Customs Classification, ITA, Korea Tax Tribunal, Korea Customs Service, good faith

JEL Classifications: F10, F13

* This work was supported by INHA UNIVERSITY Research Grant(2019)

^a First Author, E-mail: trade@inha.ac.kr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 가장 성공적인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다.¹⁾ WTO 회원국들은 ITA 성공을 이어가기 위한 ITA 확대 협상을 진행하여 2015년 7월 전체 세계 무역량의 7%에 해당하는 201개의 IT 제품을 확정했다.²⁾ WTO 출범 20주년이 되는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10차 WTO 각료회의에서 54개국 통상장관들은 ITA 확대 선언(ITA II)을 했다. WTO(2012)에 의하면 ITA는 세계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에 많은 공헌을 했다.

ITA 이행 과정에서 WTO 회원국 및 개별국가에서 ITA 제품 관련 품목분류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기술의 융합 때문에 IT 제품들의 품목분류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각국이 품목마다 다르게 관세 양허를 하는 것은 산업의 민감도와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보호할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관 당국의 품목분류는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적인 품목분류 관행은 비관세장벽이 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 세관의 보수적인 품목분류는 관세 협상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장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 조세심판원의 ITA 제품 품목분류 결정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분쟁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ITA II도 ITA가 채택했던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통일체계(Harmonized System, HS) 6단위를 기준으로 양허를 하고 있어 품목분류 분쟁은 재발할 우려가 있고 무역거래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한 검토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관련해 여러 규정에 따른다. 관세율표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을 수용한 것이다.

HS 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는 품목분류표를 말한다. HS 협약 제2조 정의에 있는 ‘품목분류표’는 통일체계(HS) 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 및 관련 번호, 부(section), 류(chapter) 및 소호의 주(note)와 ‘통일체계 해석에 관한 통칙’을 말한다.³⁾ 본 연구에서는 관세율표 별표의 호와 소호 및 관련 번호, 부, 류 및 소호의 주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ITA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조세심판원(<https://www.tt.go.kr>) ITA 품목 관련 결정사례 검토와 분석을 한다. 한국 조세심판원 관세 심판 3,504건 가운데 ITA 품목이 주로 속해있는 제84류와 관련된 것은 11건, 제85류는 21건으로 총 32건이다.⁴⁾ 이 가운데 정보기술협정(ITA) 관련 사례는 12건 있다. 조세심판원 ITA 품목 결정 12건 가운데 제84류와 제85류 사건이 11건, 90류 1건이며, 이 가운데 청구인은 다르지만, 제품이 중복되는 결정이 3건이어서 제품 수를 기준으로 8건의 결정이 있다.⁵⁾

8건 가운데 품목분류와 관련 없는 결정이 1건 있어 품목분류 결정 관련 사건은 7건이다. 품목분류 관련 결정 7건 가운데 기각이 2건, 경정이 3건, 취소가 2건이었다.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적절하다고 결정한 것은 5건이었고, 부적절하여 취소 결정한 것이 2건이었다. 기각된 사건은 모두 품목분류와 관련된 것이다. 경정 결정이 내려진 3건은 모두 소급과세 문제와 가산세 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결정 전제조건으로 품목분류가 문제가 된 사건은 2건이었고, 1건은 품목분류는 자세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본

3) 품목분류는 품목분류표에 규정된 호의 용어, 부와 류의 주, 통칙에 따라 특정 상품이 어떤 호, 소호, 품목번호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ITA는 제84류·제85류 외에 6단위 기준 제38류 1개와 제90류 14개도 포함되어 있다.

5) ITA로 검색하면 13건인데 국심2002관0079(2003.12.22)은 ITA 대상 품목이 아니다. 청구인은 ITA 협정의 수용에 따라 신설된 HS 8428.39-1010호 세번의 품목분류 내용과 용도가 쟁점 물품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나 제8428.39호는 ITA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HSK 8428.39-1010호는 ITA 양허 품목이 아니고 WTO 양허 품목이다.

1) 정식 명칭은 “정보기술제품 무역에 관한 각료 선언문”이다. ITA는 한국을 포함해서 29개국이 참가를 했으나 그 후 82개국으로 증가했다.

2) ITA 품목 확대 논의는 1997년부터 있었으나 본격적인 협상은 2012년에 시작되었다.

Table 1. Korea's Tax Tribunal ITA Goods Classification Decision

Description	Code	Classification	Decision	
Cartridges	HSK 3707.90-9200 HSK 8443.99-1000	○	Dismiss	
Other machines and mechanical appliances	HSK 8479.89-2092 HSK 8479.89-9099	○	Rectification	
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devices or of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HSK 8486.20-3000 HSK 8486.30-9090	○	Rectification	
Loudspeakers	HSK 8518.29-1000 HSK 8518.29-9000	○	Cancellation	
Other switches	Push-button type Micro type Other Snap-action	HSK 8536.50-2000 HSK 8536.50-3000 HSK 8536.50-9090 HSK 8536.50-9010	○	Dismiss
Plastic Insulated Wire	HSK 8544.41-9010 HSK 8544.41-9090	○	Cancellation	
Laser Discharge Chamber, LNM, WSM	HSK 9010.90-1010 HSK 9013.20-0000 HSK 9032.89-9090	○	Rectification	

Source: Korea Tax Tribunal (1995-2019)

Table 2. Preceding research analysis

Researcher	Topic	Methodology	Result
Kim Chang-kil and Kwak Bong-Hwan (2006)	Commodity classification and risk management	Questionnaire survey and technical statics analysis	Strict standard against commodity classification to avoid future audit
Kim Ho Cheol(2015)	Overview the origin and evolvement ITA and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issues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Need to develop relationship between ITA and WTO, product classification and scope of attachment B items and the NTB work program
Yi Ji-Soo(2018)	Evaluates Korea's achievements in implementing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Qualitative evaluation	Academic importance in filling the gap in knowledge regarding the success of trade liberalization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Christian Henn · Arevik Gnutzmann Mkrtychyan(2015)	Comprehensive study of its trade impacts by incorporating recent insights from both the global value chain (GVC) and time in trade literatures.	Gravity equation	Higher trade policy certainty affects investment and sourcing decisions in favour of signatories
Lin(2011)	Would original ITA products still be included in the ITA after technological development?	WTO EC-IT Product case analysi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does not provide a satisfactory systemic solution for the ITA

연구는 조세심판원의 ITA 대상 제품에 관한 결정 가운데 기각 사건 2건과 경정 사건 2건의 품목분류 결정 내용을 분석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하고, 제3장에서는 조세심판원 모든 품목분류 기각결정 적절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2건의 경정결정 품목분류와 처분에 대해 검토하고, 제5장에서 시사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와 차별성

1.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연구대상과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WTO 품목분류 분쟁에 관한 연구가 2건이며, 관세관련 분쟁과 일반적인 품목분류 분쟁에 관한 연구가 2건이다. 그리고 ITA의 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가 2건이다.

Kim Ho Cheol(2015)은 WTO ITA 추진 경과와 WTO 품목 범위 해석 관련 분쟁사례 등을 연구했다. WTO ITA 협상 내용과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EC - IT Products 분쟁사례를 통해 품목분류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으며, ITA와 같은 복수국간 협상이 다자적 무역자유화를 촉진하는 보완적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im Chang-Kil and Kwak Bong-Hwan(2006)은 관세 관련 분쟁 가운데 40%는 품목분류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과 무역거래자 모두 HS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같은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결정자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일선 세관에서는 품목분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선 관세가 있는 기타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심사나 심판 등 분쟁 해결 절차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고 첨단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2011)의 경우 EC의 WTO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모든 IT 제품의 무세화가 필요하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종상품'의 개념과 제품 범위를 관리하는 '양해각서'를 IT 제품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ristian Henn and Arevik Gnutzmann-Mkrtchyan(2015)은 중력 방법론을 통해 ITA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연구했다. ITA는 무역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데, 구속력 있는 양허를 통해 관세감축, 관세 제거, 고차원적인 무역 정책 확실성 관련 비관세효과 등 수입과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Yi Ji-Soo(2018)는 ITA 이행성과에 관한 연구를 했다. 이 연구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ITA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고, 정부기관, 산업계 관련자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품목분류 전문성의 확보와 자유화되는 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고 했다. 다만 ITA II가 타결된 후 3년이 지나 2019년 7월까지 ITA II 주요 품목의 무세화가 완료되는데 ITA의 이행을 검토 대상으로 하는 아쉬움이 있다.

2. 차별성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한국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 관련 결정을 분석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WTO 사례나 ITA 영향에 관한 연구를 했다. 선행연구 가운데 한국 품목분류 사례 연구와 조세심판원의 ITA 품목분류 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둘째, 한국의 품목분류 세부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관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결정 가운데 품목분류와 관련된 사건은 30% 이상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인 품목분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관세의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다. 일선 세관에서 2개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의 품목분류를 미뤄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국제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 가운데 구체적인 품목분류에 관한 사례 연구는 없으며, 특히 최근 5년 이내에 품목분류 사례에 관한 선행연구는 없다.

셋째, ITA 대상 제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연

Table 3. Summary of ITA product classification error case

	Multi-functional machines cartridges	Switches
Claimant's argument	Parts and accessories of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Tact swishes should be classified as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Å
Decision KTT	Multi-functional machines cartridges is packing containers Toner is developers which render latent photographic images visible	Customs authority decided that Tact Switches were not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KTT decided that Tact Switches could be classified both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and push-button type switches KTT decided Tact Switch as push-button type switches according to GRI rule 6(the classification of goods in the subheadings of a heading shall be determined on the understanding that only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are comparable)
Review	Cartridges is not packing containers but container Cartridges is different normal cases such as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which are suitable for long term use Cartridges is disposable and is not suitable for long term use Camera cases, musical instrument cases can be separate from camera and instrument. Cartridges can not be separate from its contents(toner)	Explanatory note of GRI rule 6 (a) said "subheadings at the same level" : one dash subheadings (level 1) or two dash subheadings (level 2). KTT should not expand GRI rule 6 up to HSK 8 digit code. According to GRI rule 3, Tact Switch should be classified as 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When by application of Rule 2 (b) or for any other reason, goods are prima facie, classifiable under two or more headings, classification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a) the heading which provides the most specific description shall be preferred to headings providing a more general description

Source: Korea Tax Tribunal (1995-2019)

구이다. 선행연구 가운데 HS 협정 부속서와 관세율표에 있는 96개의 류(Chapter) 가운데 제 84류, 제85류 및 제90류에 해당하는 ITA 대상 품목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없다. 품목분류에 관한 연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선행연구는 본 연구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 선행연구 가운데 품목분류의 중요성 인식과 세관 공무원의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

확보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일선 세관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관세가 높은 기타로 분류하고 심사·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사항에 관해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Ⅲ. 품목분류 오류 사례

1. 서설

한국 조세심판원(Tax Tribunal)의 2019년 3월까지의 ITA 제품 품목분류 결정 7건 가운데 2건이 기각되었다. 기각은 일선 세관의 품목분류와 과세처분이 적절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Tabl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 기각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기 카트리지 사건의 경우 일선 세관에서는 카트리지를 포장용기로 보고 내용물인 '토너(toner)'란 용어가 있는 '조색제(HSK 3707.90-9200호)로 분류를 했다. 카트리지는 포장용기가 아닌 용기이며, 토너는 광선(light) 또는 복사선(radiation)에 따라 감광성면(photosensitive surfaces)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visible images)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관세율표 통칙 제5호 가목 단서에서는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내용물과 함께 분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복합기 카트리지는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아니다. 복합기 카트리지는 내용물인 토너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복합기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개폐기(switches) 품목분류 사건에서 Tact Switch는 푸시버튼형 스위치와 전자기계식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로 분류될 수 있지만, 관세율표 통칙 6에 의하여 스냅작동방식의 스위치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통칙 제6호를 6단위 소호를 넘어 8단위와 10단위를 비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통칙 제6호는 5단위와 6단위까지 적용되며, 스위치의 경우 통칙 제3호('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에 따라 '전자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A 이하로 한정한다)'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복합기 카트리지와 기타 스위치는 2015년 WTO ITA II에서 양허 되어 관세가 0%로 되었다.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가 보수적으로 분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선 세관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기타(others)로 대표되는 높은 관세율'로 분류하는 관행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 처분청과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통칙 제5조와 제16조 주 부분품 해석

복합기 카트리지 품목분류 사건에서 청구인은 복합기 토너카트리지를 '조색제(HSK 3707.90-9200호, 양허관세율 6.5%)'로 수입 신고하고, 처분청이 수리했다(Tax Tribunal, 2014). 청구인은 수입신고 후 복합기 카트리지가 HSK 8443.99-1000호(양허관세율 0%)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이 ITA 취지를 이유로 복합기 토너카트리지의 품목분류 변경을 요청했으나, 복합기 토너카트리지는 ITA 양허 품목은 아니었다.⁶⁾

청구인은 복합기 카트리지는 용기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는 물품으로서 특정 복합기 모델에 맞게 설계·제작된 토너카트리지이고, 복합기 본체와 기계적 연관성을 갖는 "부분품(장착, 동력전달, 회전, 입구개폐 등)"이라고 주장했다. 제84류에 분류되는 "부분품(parts)"이 반드시 움직이는 기계적 요소(moving parts)를 갖추거나 전기적 연결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ITA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복합기의 부분품(HS 8443.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관세율표 제3707호에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바니쉬·글루·접착제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을 제외한다)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일정량으로 소분하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3707호 해설서 (5)에서 "조색제(화상의 색상을 조정하는 것)"를 분류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카트리지는 기계에 장착되어 그 내부의 토너를

6) ITA II에서는 제8443.31호부터 제8443.99호 그리고 제3707.90호도 양허 되었다.

본진 없이 배출하고 내부의 토너를 100%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고, 카트리지는 토너를 담기 위한 용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토너와 카트리는 소모성 물품이므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특성이 없이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상 조색제(HSK 3707.90-92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복합기 카트리지를 토너와 카트리로 분리하고 카트리지를 용기로 보아 품목분류를 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카트리는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본질적인 특성이 없이 토너를 보관하는 용기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통칙 제5호 나목의 '포장 용기'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통칙 제5호 가목에서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충개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containers)"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일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다. 통칙 제5호 가목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기는 모두 내용물과 분리될 수 있고, 분리된 내용물 단독으로 정상적인 물건으로 사용된다. 복합기 카트리는 내용물과 분리할 수 없고, 분리하면 정상적인 물건으로 사용될 수 없고 그 기능을 상실한다. 그리고 복합기 카트리는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복합기 카트리는 통칙 제5조 가목 본문의 용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통칙 제5호 나목은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 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packing)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다. 통칙 제5조 나목은 '용기'가 아니라 '포장 용기'라고 것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포장은 물건의 가치를 높이거나 물건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포장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물건을 싸거나 꾸림 또는 싸거나 꾸리는 데 쓰는 천이나 종이'이다. 포장에

쓰이는 천이나 종이는 쉽게 제거할 수 있고, 통칙 제5호 가목의 용기처럼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포장재료와 포장 용기는 내용물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복합기 카트리는 포장 용기가 아니다. 복합기 카트리를 제거했을 때 토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쉽게 제거할 수 없다.

통칙 제5호 가목 해설 (1) (2)에서 '용기'는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고 '그들이 사용될 물품만큼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설계된 것이다. '용기'는 운송이나 보관 중에 물품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한다. 내구성과 물품 보호 기능을 기준으로 '용기'와 '단순한 포장'의 구분이 가능하다. 복합기 카트리는 내구성과 물품 보호기능이 있으므로 통칙 제5조 가목의 '용기'에 더 가깝고 나목의 '포장용기'는 아니다.

다음으로 조세심판원은 제3707호의 호의 용어를 간과했다. 제3707호의 용어는 '사진용'의 화학조제품 및 '사진용'의 단일물품'이다. 제37류 주 2는 "사진"이라 함은 광선 또는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복합기 토너는 사진용이 아니다. 복합기 토너는 광선 또는 복사선을 사용하지 않고,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시상을 형성하지 않는다. HSK 3707.90-9200호가 조색제(toner)라고 되어 있으나 복합기 카트리지 안에 있는 토너가 '광선 또는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가시상을 형성'하는 사진용 화학제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번에 있는 '조색제(토너)'라는 용어에 초점을 두고 분류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통칙 제6조 확대 해석 오류

개폐기(스위치) 품목분류 사건은 스위치가 ITA 무세 대상 품목인지에 대한 것이다(National Tax Tribunal, 2008). WTO의 ITA 양허표에는 HS 8536.50호 기타 스위치(other switches)에는 3개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11A 이하의 전자기계식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Electromechanical snap-action switches for a current not exceeding 11 amps)를 제8536.50-9010호

에 품목분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Tact Switch를 기타 스위치(HSK 8536.50-9090호, 관세율 8%)로 수입 신고한 후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HSK 8536.50-9010호, 관세율 0%)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처분청이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스냅 방식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는 HS 협약으로 정한 6단위의 품목명은 영문을 우선하고 HSK로 규정한 8단위 이하는 국문명을 우선한다는 것과 스냅 방식의 스위치를 ITA 협정에서 관세양허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Tact Switch를 기타 스위치(HSK 8536.50-9010호, 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Tact Switch가 전자 스냅동작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에서는 Tact Switch는 상부 또는 측면의 버튼을 물리적인 힘으로 누름으로써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푸시버튼형의 스위치에 해당함과 동시에 내부의 접점인 메탈돔의 탄성에 의해 회로가 개폐되는 11Å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에도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통칙 제6호를 준용하면 푸시버튼형의 스위치는 HSK 8단위(8536.50-20)에 규정되어 있고, 11Å 이하의 스냅동작방식의 스위치는 HSK 10단위(8536.50-9010)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품목분류 체계상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푸시버튼형의 스위치로 보아 HSK 8536.5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통칙 제6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칙 제6호에서는 6단위 소호 수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통칙 제6호는 “법적 목적상 물품이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소호 안에서만 비교할 수 있는 경우 동일 호(headings)의 소호 수준에서의 분류는 ‘소호의 용어와 소호의 주 그리고 통칙 제1호부터 5호까지를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Tact Switch의 호(제8536호)와 소호(제8536.50호)가 같으므로 통칙 제6호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심판원에서는 통칙 제6호를 6단위 소호를 넘어 8단위와 10단위를 비교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 제품의 소호는 같지만 8단위와 10단위 세번이 다른 경우 통칙 제6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통칙 제6호 해설 (I)에서 ‘동일 호(號) 내 소호 수준에서의 분류는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쟁점 스위치의 호가 같고 소호의 용어도 같으며 소호의 주가 없으므로 통칙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여 분류해야 한다. 결국, Tact Switch의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품목을 분류해야 한다. 통칙 제3호에서는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푸시 버튼형’보다 ‘전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Å 이하로 한정한다)’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IV. 품목 재분류와 신의성실의 원칙

1. 서설

조세심판원 심판 사건 가운데 통관이 완료된 후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다시 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가 3건이었다.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를 분석해보면 품목 재분류 사건의 경우 깊이 있는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은 소급과세의 부당함을 다투는 데에 집중하고 품목분류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 3건의 재분류 사건 가운데 1건은 소급과세 취소 결정을 하였고, 2건은 소급과세 처분은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건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동일한 내용이므로 1건을 선택하여 검토한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 품목 재분류를 했으나 청구인들이 재분류되기 전의 세번으로 수입신고를 하여, 통관 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어 과세처분을 한 2건의 사건에서 조세심판원(2003년 이전 명칭은 국세심판원이다)의 결정은 다르게 나타났다. 조세심판원은 반도체 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사건에서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 재분류로 인해 관세율이 달라진 경우 처분청의 관세 경정(소급과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관세율표 해설서의 법

Table 4. Summary of ITA product reclassification and retroactive taxation

	Ion implanters for doping semiconductor materials	Insulated wire
Claimant's argument	Rectification decision due to post reclassification was violation of good faith principle	Cancellation of tax refund was against protection of trust
Decision KTT(NTT)	<p>Customs services did not violate the good faith principle because it's revision of rule and customs gave proper and timely notice</p> <p>Chapter 84 notes 9 (B) ruled that for the purposes of heading 84.86, the expression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covers the fabrication of substrates into a flat panel.</p> <p>Explanatory notes of heading 8486 ruled that Ion implanters for doping was covered by the heading 8486</p>	<p>Tax refund is the express of official opinion</p> <p>No attributable reason for claimant's reliance</p>
Review	<p>Need to review legal effect of explanatory notes</p> <p>WTO EC - IT Products panel decided that explanatory notes did not bind legally but general principle Explanatory notes is measure and useful source of standard in tariff classification</p> <p>KTT's surtax exemption decision need to be reconsideration because claimant's did not check reclassification and it's negligence</p>	<p>No violation of trust of claimant</p> <p>Tax refund was customs office's mistake and NTT did not review the mistake</p>

Source: Korea Tax Tribunal (1995-2019)

적 효력 검토 없이 해설서에 근거하여 재분류가 타당하다고 했다. WTO 사례나 EU 조세심판원 사례를 검토해보면 관세율표 해설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조치(measure)에 해당하고 품목분류에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절연전선 사건에서 국제심판원은 과오납환급 처분이 행정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처분청의 과오납환급은 품목분류에 대한 착오 때문이었다. 착오로 인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소급정정처분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품목분류 사전회신의 효력

반도체 재료 도핑을 위한 이온주입기(Ion implanters for doping semiconductor materials)

는 ITA에서 제854311호로 예외 품목 없이 모두 양허가 되었다. 청구인은 물품 수입에 앞서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본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기기로 반도체제조용 기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반도체 재료인 p-Si(다결정실리콘) 박막 속에 Dopant 이온을 주입하는 것이므로 반도체 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로 분류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이 HSK 8543.11-0000호로 수입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수리하였다. 2007년부터 HS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이온주입기(Ion Doping System)가 제85류에서 제84류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이온주입기를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가 분류되는 HSK 8486.20-3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수리했다(Tax Tribunal, 2011). 그 후

Table 5. Korea Customs Service Notice(2002–2007 HS Comparison Table)

2002 Version	2007 Version	Note
8543.11	ex8486.20	Newly-established heading 8486(Machines and apparatus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 and flat panel displays)

Source: Korea Customs Service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온주입기가 ‘기타의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HSK 8486.30-9090호, 8%)’로 품목분류 된다는 통보를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세와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관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받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해당 품목번호로 수입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물품의 품목분류가 사후에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결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세법」 규정에 따라 사전에 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하여 통지받은 내용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을 뿐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쟁점 물품이 2007년 이전에 제 8543.11호의 관세양허품목에 해당하였던 것은 관세율표상 반도체제조용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의 이온주입기가 세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로 분류하였고, 2007년부터는 반도체 제조설비 이온주입기가 관세율표 제8486.20호에 분류되고,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이온주입기는 관세율표 제8486.3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30호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반도체제조용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86.20호로 잘못 신고했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2006년 이전의 관세율표에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없었으

나,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에는 제8486.30호로 되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 9 나목7과 관세율표 제8486호 해설서⁸⁾에서 도핑용 이온 주입기를 예시하고 있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온주입기에 대하여 2007년부터 개정된 관세율표를 적용해야 하고, 2007년 개정된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가 명백히 제8486.30호에 있는 만큼 쟁점물품이 제8486.30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 물품에 대하여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에 해당하는 HSK 8486.30-9090호로 분류하고 부족 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을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조세심판원은 가산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Supreme Court, 2005)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기타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86.30-9090호로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물건의 품목분류 근거를 제84류의 주(note)와 호(heading)의 해설서에서 찾았다. 관세율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06년 이전의 관세율표의 제8543.11-0000호의 용어는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였다. 2007

7) 제84류 주 9. 나.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상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는 기판을 평판으로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8) 제8486호 해설서, (C)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평판으로 기판(基板: substrate panel)을 제조하는 (5) 도핑(doping)용 이온 주입기(ion implanters)를 포함한다.

년 이후 제8486.30호의 용어는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이다. 그리고 제84류 주 제9호 나목에 ‘평판디스플레이’에 대한 정의가 있어 이온주입기가 반도체용과 평판디스플레이용으로 구분된다.

이온주입기에 대한 정의는 HS 해설서 제 8486호 (B)에 나온다.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호의 해설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HS 해설서는 관세청 고시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있다(Customs Service Notice 2016-15). 행정규칙인 고시의 법적 효력에 대하여는 판례와 학설에 따라 다르다. WTO EC - IT Products 패널은 US - Underwear 항소기구의 결정을 인용하며 EC 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Nomenclature) 해설서가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적용(general application)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해설서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소 대상인 조치(measure)에 해당한다고 했다(Develop Dr. Eisbein v. Hauptzollamt Stuttgart-West Case C-35/93, 1993). 국내의 사례를 종합하면 HS 해설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품목분류를 함에 있어 유용하고 필요한 자료이다. 조세심판원이 HS 해설서를 참조하여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설비 이온주입기를 관세율표 제8486.30호로 결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심판원은 품목분류표가 변경되기 전의 품목분류 사전회신의 경우 WCO에 의해 품목분류가 변경된 품목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관세청의 변경되기 전의 품목분류 사전회신은 새로운 품목분류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견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은 관세평가분류원의 2006년 청구인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검토 회신과 HS 연계표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로 청구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고 했다. 호의 이동·분리에 관한 관세청 고시는 <Table 5>와 같다.

관세청이 고시한 내용의 비교에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신설에 따른 내용변경’이라고 되어 있다. 고시에 새로운 소호가 신설·분리된다는 내용이 없지만 ‘평판디스플레이’를 수입하는 자는 소호를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다. 만약 ‘반도체 제조용 기계’ 호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다면 소호를 확인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신설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계자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다. 청구인의 주장에는 호의 신설 관련 공고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가산금 부과를 결정할 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Supreme Court, 2005). 청구인이 공고를 보고 소호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분명 ‘과실’이자 ‘의무해태’에 해당한다. ‘의무해태를 닦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착오에 의한 과오납환급

절연전선(Plastic Insulated Wire) 품목분류 사건에서 청구인은 1997년부터 절연전선(Plastic Insulated Wire)을 HSK 8544.41-9090호(기본 8%)로 수입했다(National Tax Tribunal, 2003). 청구인은 다른 세관이 다른 민원인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사건 물품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HSK 8544.41-9010호, 양허 0%)으로 품목 분류하자 처분청에 과오납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다. 처분청은 다른 세관에서 쟁점물품을 HSK 8544.41-9090호로 품목분류를 하자 청구인에게 관세·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0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했으며, 과오납환급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심사를 통해 환급하여 주었으며, 세관의 과오납금 환급은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이 다른 세관의 품목분류를 근거

로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물품에 대하여 직접 품목분류 사전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다른 민원인의 HS 품목분류 질의회신(유효기간 1년)과 관세청의 “HS 8544호의 절연전선 구분방법”은 품목분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리고 고시하지 아니한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회신을 근거로 수입 통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스스로 구속되거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국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쟁점 물품에 대하여 다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HSK 8544.41-9010호로 회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신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 주었다면 이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 견해표명에 따라 처분청에서 쟁점 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544.41-9090호로 변경하여 경정고지할 때까지 일관되게 HSK 8544.41-9010호로 수입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온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소급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ITA에서 절연전선(제8544호)은 6단위 기준 3개의 개별 품목과 제8544.70호 광섬유케이블이 양허 되었다. 제8544.41호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통신용 기타 전기도체(전압 80V 이하의 것에 한한다)’였다. HSK 제8544.41-9010호는 ‘전기통신용’이고, HSK 8544.41-9090호는 ‘기타’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품목분류의 문제점에 관해서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전기통신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청은 직접 품목분류 사전회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시하지 아니한 다른 민원인의 HS 품목분류 질의회신(유효기간 1년)을 근거로 수입통관을 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스스로 구속되거나 법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전국 세관에 민원회신 결과를 통보하였고, 회신결과를 모든 민원인이 알 수 있는데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절연전선 사건 처분청의 견해는 현재에는 유지될

수 없다. 관세법 제86조 제4항에서는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 결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을 고시 또는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세관에서 착오로 품목분류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과오납환급을 해 주었다. 국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과오납환급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법원이 밝힌 처분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upreme Court, 1995a). 처분청과 국세심판원은 품목분류를 한 세관의 착오에 대하여 언급을 했으나, 착오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Supreme Court, 1995b). 처분청의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절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심판원의 결정대로 과오납환급이 공식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할지라도 착오에 의한 견해표명은 취소할 수 있다.

V.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99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든 ITA 제품 품목분류 결정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57%(전체 7건의 결정 가운데 4건)의 ITA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세관은 품목분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선 관세가 높은 기타(others)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사후에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나 심판 등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선 세관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품목분류를 한 후 사후에 품목분류가 다르게 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감사를 받고 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수밖에 없다.

일선 세관 공무원이 품목분류를 보수적으로 하고 최종 판단을 관세법에서 정한 심사와 심판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품목분류 결정도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 납세자

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특히 ITA 대상 품목과 같은 최신 첨단상품의 품목분류 오류는 일차적으로 납세자에게 피해가 가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심판대상 ITA 물품들은 한국 IT 산업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품목들이었다. 한국 정부는 IT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품목들을 선제적으로 무세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IT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세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분류 담당 공무원의 보수적인 품목분류는 제도개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품목분류심사제도의 상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전 품목분류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관 후에도 품목분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관에서 수입 신고한 내용과 다른 세율로 변경되는 품목분류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품목분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품목분류위원회에 품목분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담당 공무원이 높은 관세율로 분류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

로 보인다.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새로운 첨단상품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기술과 새로운 물질이 포함된 제품과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품목이 분류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시스템에 기록하여 수출입 신고할 때에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새로운 품목 분류 내용을 이미 통관을 한 자에게도 통보하여 과오납환급을 받거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거래자들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관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품목분류를 결정한 후 무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학 무역교육에서 품목분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 결정 가운데 ITA 제품 품목분류 결정을 연구한 것이다. 조세심판원 결정 가운데 ITA 대상 품목이 아닌 다른 류별 결정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는 다음 기회에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Christian Henn and Arevik Gnutzmann-Mkrtchyan (2015), "The Layers of the IT Agreement's Trade Impact," WTO Economic Research and Statistics Division, WTO Working Paper ERSO-2015-01, 1-44.
- Develop Dr. Eisbein v. Hauptzollamt Stuttgart-West Case C-35/93 (1993) ECR I-2655.
- Kim Chang-kil and Kwak Bong-Hwan (2006), "An Empirical Study on the Risk Factor of 『HS implementation』 of the Customs Administr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7(3), 2006. 25-47.
- Kim Chang-Kil (2005), "A study on the HS Nomenclature and Classification Dispute and Problem Structuring,"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6(4), 49-75.
- Kim Ho-Cheol (2015), "Current Issues of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 Trade Law, Vol. 124, 75-111.
- Lin, sai-yu (2011), "Systemic Reflection on the EC-IT Product Case: Establishing an 'Understanding' on Maintaining the Product Coverage of the Current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n the Face of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World Trade, Vol.45 No.2 401-430.
- National Tax Tribunal(2003) Kuksim2002GUAN0190.

- National Tax Tribunal(2008) Kuksim2007GUAN0130
Supreme Court (1995a) Adjudgment, 94NU12159, Judgment.
Supreme Court (1995b) Adjudgment, 95NU6311, Judgment.
Supreme Court (2005) Adjudgment, 2003DU13632, Judgment.
Tax Tribunal (2011) Josim2011GUAN0023.
Tax Tribunal (2014) Josim2014GUAN270.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vailable from http://www.wcoomd.org/en/topics/nomenclature/instrument-and-tools/hs_convention.aspx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6a),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Singapore. Available from https://www.wto.org/english/docs_e/legal_e/itadec_e.htm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6b),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Cotton and Man-Made Fibre Underwear (WT/DS24/R), Geneva, Switzerland: Auth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997), Report of the Panel, United States - Restrictions on Imports of Cotton and Man-Made Fibre Underwear (WT/DS24/8). Geneva, Switzerland: Auth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05), Report of the Panel, European Communities - Customs Classification of Frozen Boneless Chicken Cuts (WT/DS269/R) Geneva, Switzerland: Auth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0), Report of the Panel, European Communities and Its Members States-Tariff Treatment of Certa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WT/DS375/R, WT/DS376/R, WT/DS377/R) Geneva, Switzerland: Auth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2), 15 Year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Trade, innovation and global production networks, Geneva, Switzerland: WTO Publications.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15).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Expansion of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WT/MIN(15)/25) Geneva, Switzerland: Author.
World Trade Organization (WTO)(2019), Current Situation of Schedules of WTO Members. Available from https://www.wto.org/english/tratop_e/schedules_e/goods_schedules_table_e.htm#fnt-vii
Yi, Ji-Soo (2018),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a qualitative evaluation Korea Trade Review, Vol 43. No 4., 131-153.